

광주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나573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단체

2. A단체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F, G, H의 파
산관재인 AD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서정암, 송진민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20.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 4. 28. 선고 2018가단201921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E와 피고 B 사이에, (1) 별지 1목록 1, 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별지 1목록 2, 3, 5 내지 10번 기재 각 부동산 및 시설물에 관하여 2018. 1.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55,991,7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E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다. E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라. 피고 B는 (1) 별지 1목록 1, 4번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E에게 3/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8. 2. 22. 접수 제18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A단체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F, G, H의 파산관재인 AD에게 6/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8. 2. 22. 접수 제18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 A단체에 55,991,717원, 원고 A단체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F, G, H의 파산관재인 AD에게 111,983,4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E에게 3/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8. 3. 5. 접수 제2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 A단체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F, G, H의 파산관재인 AD에게 6/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8. 3. 5. 접수 제2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바. 피고 D은 별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E에게 3/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8. 4. 10. 접수 제3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 A단체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F, G, H의 파산관재인 AD에게 6/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8. 4. 10. 접수 제3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A단체(이하 원고 A단체이라 한다) :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 B와 E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1 내지 5번 각 부동산 및 별지 1목록 기재 6 내지 10번 각 시설물에 관하여 2018. 1.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청구하고, 피고 B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 B는 E에게 별지 1목록 기재 1 내지 5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등기소 2018. 2. 22. 접수 제18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나. 원고 A단체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F, G, H의 파산관재인 AD(이하 원고 A단체의 소송수계인이라 한다) : 주문 중 위 원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위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부인의 소로 그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를 "원고 A단체"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제1심 판결 제5쪽 1행 마지막 부분부터 3행까지를 "K조합은 2019. 12. 14. 별지 1목록 기재 2, 3, 5 내지 10 기재 각 부동산 및 공장재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12행 다음에 "한편, 피고 B는 2019. 12. 16.부터 2021. 3. 15.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한 원리금 16,031,337원을 변제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위쪽 표 관련 각주 9) 내용을 "이는 망인 사망 후인 2017. 12. 19. 채무자가 E로 변경되었고, 2018. 2. 22. 변제되었다."로 변경하고, 위 표 5번 E의 대여금 채무에 "각주 1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기초사실 마지막 부분에 "마. F, G, H은 2020. 4. 24. 광주지방법원 2020하단340, 341, 34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AD이 선임되었다."를 추가한다.

2. 판단

가. 부인권 행사 대상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파산관재인인 부인 대상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포함하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이는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한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등 참조).

나)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등 참조). 보증인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인하여 그 채권이 변제자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변제자는 이전받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A단체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J은행에 E 등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E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J은행의 대출금 채권은 민법 제481조 소정의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변제자인 원고 A단체에 이전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1. 16. 내지 2018. 3. 8. 이전에 성립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원고들이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¹⁾.

3) E 등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E 등이 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E 등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 A단체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부인의 대상이 되며,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²⁾.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는, E의 사촌 형제자매인 O의 소개로 E 등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시설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2억 3,250만 원은 피고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같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750만 원(= 2억 5,000만 원 - 2억 3,250만 원)을 E 등에게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6, 16, 19 내지 23호증, 을 제1, 9, 10,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O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감정축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시설물의 감정가는 425,782,520원인데, 피고 B는 E 등으로부터 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 2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은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가액인 2억 원과도 일치하지 않는데, 피고 B는 그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 B가 매매대금 잔금으로 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750만 원(을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745만 원이다)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늦은 2018. 3. 2.에야 송금된 점, ④ 피고 B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일 및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인 2019. 11. 21.에야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고, 2019. 11. 19.에야 통장을 개설하여 위 근저당권부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자신의 부친 P이 Q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내의 동생인 망인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P의 소유이고,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인 망인을 상속한 E 등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어 E 등이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피고 C의 부친인 P과 그 부모들이 1972. 6.경부터 거주하고 있고, 피고 C와 그 모친이자 망인의 형제자매인 R도 2000. 11. 16.경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을 제1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 O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P은 2005.경 S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그 돈으로 Q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P의 처 R이 2010. 2. 12. 및 2010. 2. 24. S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 P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Q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망인이 생전인 2017. 7.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을 뿐, P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P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지만 향후 대한민국으로 귀국할 경우 별장으로 사용할 목적이나 투자의 목적으로 E의 사촌 형제자매인 O가 자신을 대리하여 E 등과 사이에 E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만 원으로 정한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E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E 등이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 명의의 계좌에 피고 D이 2018. 3. 5. 500만 원, 2018. 3. 22. 3,000만 원, 2018. 3. 29.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8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O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O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D은 E 등에게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위 계좌이체 내역과 불일치한 점, ② 피고 D이 이 사건 제3 매매계약 이후 E 등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피고 D은 인천에 거주하다가 사업을 위하여 캐나다로 출국하여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인데, 전남 완도에 소재하고 있고 E 등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제3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 D은, O가 자신을 대리하여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인 O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가 피고 D을 대리하여 E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O가 피고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O가 E의 사촌 형제자매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가 이 사건 제3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5) 피고들의 반대급부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1,745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한 후 채무원리금 16,031,337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므로 피고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위 법 제398조에 따른 주장으로 보인다), E 등이 위 각 매매계약을 통하여 받은 매매대금이 파산재단에 현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들이 위 법 제398조에 따라 재단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려되는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별지1 목록 순번 1, 4번 기재 각 부동산, 별지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 사건 제2, 3 매매계약 및 별지1 목록 순번 1, 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각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①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제1, 4번 기재 각 부동산 중, E에게 3/9 지분에 관하여, 원고

A단체의 소송수계인에게 6/9 지분(= F, G, H의 각 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②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E에게 3/9 지분에 관하여, 원고 A단체의

소송수계인에게 6/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③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E에게 3/9 지분에 관하여, 원고 A단체의 소송수계인에게 6/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1 목록 순번 2, 3, 5 내지 10번 기재 각 부동산 및 시설물

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나 부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재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1 목록 순번 2, 3, 5 내지 10번 기재 각 부동산 및 시설물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2019. 11. 21. 피고 B로 변경되고, 이후 피고 B가 위 채무의 원리금을 일부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는 원고 A단체 및 원고 A단체의 소송수계인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앞서 든 각 증거들,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변론

종결일 무렵 별지1 목록 순번 2, 3, 5 내지 10번 기재 각 부동산 및 시설물의 시가는 399,160,520원[= 별지1 목록 순번 2, 3, 5번 기재 각 부동산 시가 123,957,000원(=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 시가 150,579,000원 $\times$ 4,5913) / 5,577㎡4)) + 별지1 목록 순번 6 내지 10번 기재 각 시설물 시가 275,203,52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200,787,615원인 사실(망인의 K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무 30,397,755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로 보기 어렵다)이 인정되므로, 별지1 목록 순번 2, 3, 5 내지 10번 기재 각 부동산 및 시설물의 공동담보가액은 198,372,905원(= 399,160,520원 - 200,787,615원)으로, 이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인 J은행의 E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 합계 431,472,513원(E 152,940,171원, F, G, H 각 92,844,114원)의 범위 내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E 등과 피고 B 사이의 별지1 목록 순번 제2, 3, 5 내지 10번 기재 각 부동산 및 시설물에 관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앞서 본 위 부동산 및 시설물의 공동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167,975,1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고 A단체에 55,991,717원(= 167,975,150원 $\times$ 3/9), 원고 A단체의 소송수계인에게 111,983,433원(= 167,975,150원 $\times$ 6/9)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단체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 A단체의 소송수계인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은 원고 A단체의 소송수계인의 소송수계 및 교환적 청구변경에 따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운, 판사 정영하, 판사 황진희

별지1

부동산 목록

1. 전남 완도군 T 전 565㎡
2. 전남 완도군 U 양어장 4,129㎡
3. 전남 완도군 V 양어장 158㎡
4. 전남 완도군 W 전 421㎡
5. 전남 완도군 X 양어장 304㎡
6. 전남 완도군 U, Y, V, X
철파이프조 보온덮개지붕 단층 동식물 관련 시설(전북 치패장) 2,762.12㎡
7. 전남 완도군 T, W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관리사 66.5㎡
8. 전남 완도군 U, V, X
양수설비 1식(국산 2010. 6. 제작)
9. 전남 완도군 U, V, X
물탱크(해수여과장치)(국산 2010. 6. 제작)
10. 전남 완도군 U, V, X
수변전설비(국산 2010. 6. 제작) 끝.

별지2

부동산 목록

1. 전남 완도군 Z 대 493㎡

2. 전남 완도군 Z

[도로명 주소] 전남 완도군 AA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118.8㎡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79.2㎡

블록조 스텔지붕 단층 주택 23.1㎡ 끝.

별지3

부동산 목록

1. 전남 완도군 AB 전 275㎡

2. 전남 완도군 AB

[도로명 주소] 전남 완도군 AC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9.4㎡ 끝.

- 1) 원고들은 선택적으로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변제자대위 법리에 기한 피보전채권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원고는 E 등과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E 등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이상, 위 주장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3) 별지1 목록 순번 2, 3, 5번 기재 각 부동산의 면적을 더한 값이다.
- 4)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의 면적을 더한 값이다.